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세종이엔텍(김형석)

나. 전화번호 : 044-863-8735

2. 명칭 : 파이프 내부 커팅장치 및 연결소켓을 활용한 지열 지상천공식 지중열교환기 시공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기술의 요지>

탑다운공사 터파기 진행 전 지상레벨(상부)에서 지열 천공 후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면서 최하층 레벨에 이물질 차단용 소켓을 적용하여 파이프 내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고, 파이프 내부 커팅 장비로 최하층레벨에서 여유 배관을 절단, 제거함으로써 이후 터파기시 발생하는 지중열교환기 파손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를 위한 반복적 작업자 투입을 최소화하여 비용절감 및 안전을 향상 시킨다.

<범위>

지열 천공 후 지중열교환기를 설치시 이물질 차단용 소켓과 구슬을 이용하여 파이프 내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고, 최하층 레벨에서 파이프 내부 커팅 장비를 지중열교환기 내부로 삽입 후 소켓 상부에서 회전체의 둥근 톱날회전으로 커팅 후 여유 배관을 지상에서 뽑아 제거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